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자》

- 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 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다. 독거이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4조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이용자 모집방법》

- 가. 인터넷,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모집한다.
- 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라.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나. 기존 계약에서 계약 내용과 시간이 추가되거나 매년 수가 변경 시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기로 한다.

제7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노인성 질환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전문적인 케어와 관리로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Long-term Care 홈페이지의 급여 기준 및 수가와 같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구 분	수 가 (단위: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구 분	수 가 (단위: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44,240	70,850	78,580

구 분	수 가 (단위: 원 / 회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7,840	47,450	57,090

구분	본인부담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의료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6% or 9%	6%	0%

-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다.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이용자의 개인적인 기록 및 열람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권리
-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

제10조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5) 폭행, 욕설, 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1)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공단으로부터 환수가 발생했을 때
- 2)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4)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안내는 지체 없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가. 서비스의 내용

-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 ④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등 외출 동행
 - 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3) 방문간호 : 서비스의 내용 : 장기요양등급(1~5)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건강관리와 필요한 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기본건강관리(혈압, 맥박, 체온, 혈당체크 등)
- ② 수급자별 맞춤 신체훈련 제공
- ③ 비위관 교체(L-tube change), 유치도뇨 교체(Foley catheter change)
- ④ 상처(위루관, 기관절개관, 당뇨발 등 포함) 및 욕창 드레싱
- ⑤ 투약관리 및 교육(인슐린투약 포함)
- ⑥ 구강흡인(기관지절개관)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 1)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2)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 3)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납입

-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2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한다.
-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당월 이용료를 익월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가. 기관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현대해상배상책임보험 (1544-8901) / 각 4대보험법에 따라 가입)

- 1)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도 중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요양보호사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15조 《요양보호사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자연사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갑작스런 발작증상으로 입원이나 사망하였을 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2) 요양보호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